

## 중국 제조물 책임법의 풀이 (I)

글·노시열 대표이사 주식회사 필룩스

### 1. 제조물책임 관련 법규

중화인민공화국은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질량법(제품품질법)을 채택하고, 동일 공포하여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제품품질법은 제품의 품질관리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만이 아닌 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엄격책임을 규정하는 등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종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제품품질법은 중국의 WTO가입을 통한 통상확대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전체 6장 74조의 제품품질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 2. 제품품질법의 특징

중국의 제품품질법은 결함 제품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한 단순한 민사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행정법적인 측면도 함

유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을 띠는 특징이 있다.

#### 1) 제1장(총칙)

제1장은 제품품질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 제2장(제품품질의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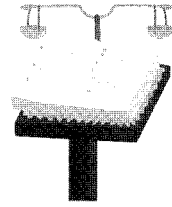
제품품질의 감독관리에 대해 제품품질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감독검사제도 등 주로 국가에 의한 품질의 감독관리체제를 정하는 외는 사용자나 소비자가 제조자 등에 대한 문의, 권리 및 관계기관에 대한 품질문제에 대한 신청권을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단체에 소비자지원을 위한 각종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3) 제3장(제조자,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

제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에 대해 표시상의 책임도 포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4) 제4장(손해배상)

손해배상에 관해 제품의 수리, 교환, 반품의 책임외에 결함 제품에 대해 제조자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의 규정 외에 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기간제한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5) 제5장(벌칙규정)

제품의 품질감독 관리책임 및 제조물책임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음.

6) 제6장(부칙)

군수품과 원자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 사항 및 개정안의 시행일이 언급되어 있음.

(중국의 제조물책임관련 법규 번역문)

제품품질법(산품질량법)

1993. 2. 22.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회 회의채택, 1993. 9. 1. 시행

2000. 7. 8.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회 회의수정, 2000. 9. 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며, 제품의 품질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법에서 제품이라 함은 가공·제조를 거쳐 판매에 제공된 제품을 말한다.

③ 건설공사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건축부재·부품 및 설비에 대하여는 전항에 규정하는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제도) 제조자 및 판매자는 건전한 내부제품품질관리제도를 두어 부서의 품질규범, 품질책임 및 적절한 심사방법을 엄격히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제품품질책임) 제조자·판매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품질책임을 진다.

제5조(허위의 품질표시의 금지) 인정표지 등의 품질표시의 위조 또는 도용을 금지한다. 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하는 것, 타인의 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잡물을 혼입하거나 가짜를 혼입하거나, 위조물을 진품으로 위조하고, 열등품을 우량품으로 속이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품질관리의 장려 및 표창) ① 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방법을 보급시키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기업의 제품품질이 업계기준, 국가기준 및 국제적

기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초과할 것을 장려한다.

② 제품의 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나아가 제품품질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는데 성적이 현저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한다.

**제7조(인민정부의 업무)** 각급의 인민정부는 제품품질의 향상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넣어 제품품질업무에 대한 통일기획 및 수배·지도를 강화하고 제조자 및 판매자가 제품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품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함과 함께 감독하고, 각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법에 기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본법의 시행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8조(제품품질 감독책임)** ①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전국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의 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업무를 담당한다.  
② 현급 이상의 지방제품품질감독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의 범위내에서 제품품질감독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품품질감독부문에 대하여 법률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실시한다.

**제9조(감독부문의 직원의 책임)** ① 각급 인민정부의 직원 및 기타 국가기관의 직원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사리를 취하거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지역 및 해당 계통 내에서 발생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해서는 아니 되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기하여 행해지는 조사처분에 대하여 방해,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 지방인민정부 및 기타 국가기관에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기해 그 주요한 책임자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위반행위의 고발)** ① 어떠한 단위 및 개인도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기타 관련부문에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품품질감독부문 및 관련부문은 고발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고 나아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규정에 기하여 표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11조(합격제품의 배척의 금지)** 어떠한 단위 및 개인도 해당지구 외 또는 해당계통 외의 기업이 제조한 품질합격제품의 해당지구 및 해당계통에의 진입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